

불란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 상반적 기원과 관계를 中心으로 -

Rapports Entre Sécurité Sociale Et Aide Sociale En Droit  
Positif Français

羅秉均  
(한림대학 교수)

I. 서론

1.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개념

사람이 나서 죽을 때까지 그의 경제생활을 보호코자 하는 제도적 生活保障은 서구들과 여러 나라들마다 그 方法과 개념 상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하다.

모든 사회제도는 그것이 위치한 사회의 구조와 그 과거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는 당연한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제도내에서 사용되는 용어간에도 사회 또는 나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광의로서 사회보장에 대한 연구는 구라파 대륙과 앵글로 색슨(Anglo-Saxon) 문화권에서 상당한 경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후자 즉 앵글로 색슨 문화권에서의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정책분야에서 다루어 지는데 비하여, 대륙 즉 불란서나 독일 등지에서는 관계法을 기초로 한 사회제도적 측면에서 사회보장이 주로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도불유학을 하면서 불란서 사회보장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했던 필자는 관계되는 法과 그것이 具體化된 제도를 학위논문의 소재로 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논문은 자연히 法學쪽으로定向된 것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논문제목은 “불란서 실정법 체계 내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一般的으로 사회보장은 한 국가의 구성원이 모든 국민의 평생동안의 경제생활 안정을 보장코자하는 하나의 이념(idea)으로도 볼 수 있고 또는 하나

의 제도로서도 이해될 수 있겠는데, 불란서 실정법상에 나타난 사회보장의 개념은 하나의 이념으로서의 사회보장의 개념보다 좀더 具體的이고 협소한 것이 특색이다. 즉 제도로서 사회보장은 사회적 위험들( 질병, 노령, 불구, 산업재해, 가족으로 인한 경제부담 )로 부터 노동자 및 그의 가족의 정상적 수입을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금고 및 수반되는 기구들을 총괄하는데, 달리 말해서, 질병, 산업재해, 노령을 대비한 제반 사회보험과 가족수당 금고들이 포함된다.<sup>1)</sup>

反面에 사회부조는 사회보장의 보조적 제도로서, 혹은 사회보장이 제공하는 보호가 불충분하거나 혹은 사회보장의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어떤 사회적 위험이나, 직업활동이 불가능해서 정규적 소득이 없는 일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제도이다.

그런데 불란서의 사회부조( aide sociale )라는 용어는 공적부조( assistance publique )와 区別하여 사용되는 용어로서, 공적부조라 하면, 한편으로는 19-20세기 초반까지의 시설보호 위주의 보호제도를 총괄하는 고루한 개념으로 사용되며 다른 한편으로 오늘날의 제도에 사용되고 있는 공적부조란 파리 마로세유, 리옹 등 大都市의 시립병원들 및 그에 부수된 씨어비스 제도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쓰인다.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일반적 개념으로서의 공적 부조는 불란서의 사회부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부연하면, 불란서의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는 共히 제도적 보호를 일컫는 것으로서, 사회보장금고들은 법인체식 운영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조직과 운영은 私法분야에서 主로 다루어지고 있는 反面에<sup>2)</sup> 사회부조는 一般行政의 一部로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직접 조직하고 운영하는 故로 全의 으로 公法分野에 속한다.

불란서에서 통용되는 사회적 보호(protection sociale)라는 용어는 이상에서 설명한 협의의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그리고 여타의 사회적 급여를 총괄하는 개념으로서, 영어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과 흡사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 2. 문제제기

19세기 말의 사회보험과 오늘날의 사회보장은, 그들이 보호대상으로 하는 사람들과, 보상하고자 하는 사회적위협의 폭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산업사회를 하나의 생산체계로 생각할 때, 노동력은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다시 말해서, 질병, 산업재해 등의 사회적 위협은 노동생산성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사회는 노동자계급의 생활을 보호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수단으로서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의 존립근거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경제단위체제로서의 국가는,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 제도를 세우고, 노동자들의 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유지 또는 증대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세기 말기의 사회보험의 보호 수준은 노동자계급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그 당시 노동자 계급의 유일한 생활수단으로서 임금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약속한 급여금은 “최저생활보장”과 “소득의 보장”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혼돈해서 쓰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노동자계급이 경제적 약자로서 동일시될 경우 이러한 혼돈은 아무런 보호기술상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노동자층이 더 이상 경제적인 약자가 아니라든가, 아니면 경제 약자로서 남아 있어도 그보다 더 빈곤한 층이 생겨난다면, 산업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生活보호체제로서의 사회보험 또는 사회보장은 최저생활보장(즉 경제적 약자를 보호함)이란 목표와 노동자의 정상적 소득의 보장(즉 노동권의 보호)이라는 목표 사이에 마찰이 생겨나게 되고, 이 마찰은 보호기술로서 보험(즉 보상원칙에 입각)과 최저생활보장(즉 부조의 원칙에 입각) 사이에 명확한 구분과 선택적 적용이라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 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사회로서의 한 국가가 가지는 사회보장제도의 두 가지 이율배반적인 목표를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그 하나는 “전국민의 최저 생활보호”라는 목표와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정규 소득의 보장”이라는 목표다.

그런데 현대사회, 특히 서구과 및 미국의 경우, 봉급이라는 불안정한 생활수단에만 의존하는 소위 봉급생활자 계층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전국민을 보호한다는 사회보장의 원칙(다시 말해서 Beveridge가 말한 universality)은 자칫 노동자 및 그 가족의 보호라는 것과 혼돈되기 쉽고, 우

리같이 아직 봉급생활자 계층 비율이 전 국민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사회에서는, 위에서 말한 사회보장의 두 가지 목표는兩者間에 상당한 마찰이 있는데도, “전국민에의 일반화”라는 목표달성을 집착하다가 보면, 그 구분의 중요성마저 간과해버리기 쉽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목표와 보호기술상의 명확한 구분 및 두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사회보장제도의 우선적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장기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속고한 후에 선택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그래서 만약 노동자 및 가족의 보호에 그 우선권이 주어진다면 보험원칙에 따라 남부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장에 보험금 전액이 쓰여져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만약 전국민의 생활보장이라든지 의료보호에 초점이 맞추어 진다면, 보험의 원칙을 버리고, 貧者와 富者, 생산층 인구와 비생산층 인구 間의 소득재분배에 그 우선권이 돌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조만간 복지국가 실현을 위하여 헌법에 최저생활 보호를 전국민의 기본권으로 명시할련지도 모른다. 이 경우 모든 국민은 단순히 그가 내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원리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현재 실시 중에 있는 의료보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원칙에 입각하여 의료 및 사회보장의 범위를 확대시켜 나아간다면, 보험의 원칙 즉 보험금 납부와 수혜수준 間의 인과관계는 최대한 존중해가면서 일반화 작업을 추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서구 여러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크게 두 범주로써 나눌 때, 그 첫째는 전국민의 최저생활보호에 역점을 두는 영국 및 화란 등의 제도들과, 그 둘째로는, ILO 협약 제67조의 권고에 따라 노동자 및 그 가족의 정규수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여타의 나라들 특히 블란서, 독일 등 국가의 제도로서 설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회보장이 제공하는 혜택이 실질적인 생활보장 수단이 되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실시가 병행되어진다.

보호의 법적기술로서 부조와 보상間의 区分이 첫번째보다 두번째 경우에 더 엄격하게 지켜진다.

블란서의 경우, 사회 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보조적 제도에 불과하고 또한 후자의 적용범위가 점차 확대 되어감에 따라 다소간 퇴색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2차대전 이후,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두 실정법 체계가 실시된 이래, 두 개는 그 보호의 기술이나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위험의 수준에서相互接近해 온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혹자는, 사회부조를 아주 없애자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30여년간의 분석에 의하면, 사회부조 특히 의료부조의 경우 그 예산 규모에 있어서 즐기는 커녕 괄목할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필자에 전해에 의하면, 실정법 체계로서의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그 근원들에서부터 상이한 이념에 근거한 채 상이한 과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사회부조가 사회보험의 일반화에 따라 다소간 퇴색했다고 하나,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그 고유한 역할을 해내고 있다. 따라서 양 제도의 병립은 각자의 효율성, 즉 노동자 및 가족의 정규소득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기능과, 명실상부한 전국민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사회부조의 기능들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필연불가결한 것이다.

본 논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불관서 실정법체계 내의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첫 부분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다. 달리 말해서,兩者는 그 기원에서부터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전개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서 두 제도가 법제화된 2차대전 직후까지를 분석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현재에 대해서 다루었다. 다시 말해서, 두 제도가 실정법 상에서 어떻게 관계 맺어져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앞으로 두 제도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대한 간단한 언급을 하였다.

## II. 본 론

### 1. 과 거

개념으로서의 사회부조와 사회보장은 相異한 기원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는 사회부조의 기본 이념을 “부조”(assistance)라고 보고, 사회보장의 그것을 prévoyance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révoyance*는 불영사전에는 “foresight”라는 개념으로 설명 돼 있는 것으로 “앞을 내다봄” 또는 “미리 예견함”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풀어 설명한다면 “장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한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고, 보험 또는 저축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일반적으로, 부조는 보호의 기술로서 수동적이고 일방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부조에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事前의 자발적 노력 유무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

반대로 *prévoyance*는 능동적이고 계약의 측면에서 볼 때 상호적인 것이다. 그리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이 전제된다는 점에서 부조보다 우수한 것이다.

이와같이 사회부조와 사회보장은 그 기본되는 보호기술에서 대조적인 성격을 띤다.

우리는 사회부조의 근원을, 가족단위의 상부상조라든가 기독교적 또는 종교적 자선이라든가,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했던 고전적 의미의 공적부조라든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전통적 수준에서 사회부조는 외조자 또는 인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역할을 해 온 것이 지적될 수 있겠는데, 근간에 이르러,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생존권 개념이 실정법에 도입되면서, 부조는 역사적 오명에서 다소간 벗어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구성원에게 진 “부양의무의 개념” 또는 몇몇 나라에서는 빈곤자의 국가에 대한 “부양 채권”的 개념으로 까지 발전되었다. 그러나, 부조는 많은 나라에서 아직까지 공공질서의 유지라는 그 전형적 집착에서 완전히 탈피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이것을 위한 하나의 논리적 증거로서 부조는 불란서의 경우 그것이 맨 처음 조직될 때로부터 현재까지 변함없이 公權에 의하여 그 主導權이 장악되어 왔고, 公權의 첫번째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질서의 유지에 있기 때문이다.

부조와 대조적으로, 우리는 서구의 *prévoyance* 조직의 근원을 중세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sup>3)</sup> 당시의 상공인 계급들은 지배세력인 영주권과 맞서 자유업에 종사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직업의 안전과 생존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만들고, 이것의 기능 중에 *prévoyance*가 포함된다. 즉 이 공제조합은 조합원들의 생존을 위하여 직업연대성을 기초로 자발적으로 형성된 조직이다. 공제조합은 언제나 公權으로부터 自律性을 얻어내고자 하였으며, 산업혁명 이

후 블란서에서 번성한 상공업 노동자 신용조합( *société de secours mutuel* - ls )은 生存을 두 팔에만 의지하는 노동자 계급의 질병, 산업재해,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비한 *prévoyance* 조직이었다.

사회보험의 강제가입 조항 적용은, 조합원 및 조합의 자율성의 제한 때문에 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이 공제조합의 금고들은 사회보험의 일선조직으로 변신하고, 사회보장이 실시되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초적 형태로서의 공제조합이 가지던 자율성은 오늘에 까지 유지되어 블란서 사회보장의 중요한 기본이념으로 돼 있다.

우리는 서구사회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생활보호 기본이념의 발달추이가 부조에서 *prévoyance*로 옮겨 진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블란서의 경우, 이것을 한편으로 토지와 자연을 기초로 한 생활안전대책에서 벌어진 상공인 종사자들의 양적 증대( 블란서 혁명 이전의 봉건사회 ) 현상이 그려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권을 인간의 유일한 기본권리로 내세운 19세기의 초기 산업사회에서 소유권에서 소외되어 가는 노동자계급의 증대현상과 그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자조적 노력이 또한 부조에서 *prévoyance*로의 발달 추이를 설명해 준다.

부조에서 *prévoyance*로의 발달은, 이와 같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되어 질 수 있음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보호의 법적기술로서兩者가 가지는 한계성과 장점들에 대한 변증법적 논리를 설명된다.

즉 다시 말해서 생활보장의 보호기술들은 부조와 *prévoyance*의 두 범주로 나뉘고, *prévoyance*는 개별적인 것( 저축, 사설보험 )과 집단적인 것( 즉 구성원의 연대성을 기초로 한 것들로, 신용조합 또는 공제 조합, 사용자금고, *liberté subsidiée*, 민사책임, 가족급여, 사회보험 등 )으로 구별된다.

노동자 및 가족을 위한 생활보장의 주된 기술은, 부조에서 개별적 *prévoyance*로, 이어서 집단적 *prévoyance*로 발전되어 왔다.

앞에서 열거한 보호기술 중에서 민사책임의 한계와 가족수당의 도입 그리고 사회보험에 대해서만 살펴보자.

첫째, 민법에 규정된 민사책임의 한계;

블란서 민법 1382조와, 1386조까지 이어지는 조항들은 과실의 개념에 입각한 과실을 범한 사람의 보상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을 받기 위해

서 희생자는, 자기가 입은 손실이 대상의 과실에 의해서 이뤄 졌다는 증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 “과실”의 개념에 근거한 고전적 의미의 민사책임은 대부분의 산업재해 희생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산업재해 발생의 경우 “과실”과 “불가항력”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일러의 폭발의 경우, 그 보상의 책임은 노동자, 사용자 또는 보일러제조업자 중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고용주의 과실로 밝혀질다고 해도 지적으로 열세인 노동자가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고, 더욱기 중개업자의 농간과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희생자인 노동자에게 주는 심리적 부담 등 때문에, 배상은 타협의 수준에서 해결되고 결과적으로 희생자는 손실의 일부분 밖에 보상받지 못하게 되었다.

19세기 말,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내세운 블란서의 노동운동은 산업재해 보상에서 괄목할 만한 진전을 실현시켰는데 그 결실이 1898년의 산재보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다. 이 법이 규정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과실”에 근거한 민사책임의 영역을 능가한다.

이법의 적용여부에, 산업재해의 책임은 그 과실의 소재를 묻지 않고 고용주가 모든 보상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번에 의해 산업재해의 손해배상 관계에서 새로운 원칙이 적용된 것이다. 바로 “직업적 위험”이란 개념의 도입이다. “직업적 위험”이란 다시 말해서, 노동자의 노동에 고유한 위험으로서, 그것이 발생시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고용주가 손실부분 전액을 보상해 준다는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sup>5)</sup>

산업재해보상분야는 오랫동안, 고용주의 개인적 소관분야로 돼 있다가, 고용주의 해당 보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고, 2차대전 이후에야 그 보험들이 사회보장금고로 병합되게 된다.<sup>6)</sup>

둘째, 가족수당 제의 설치에 대해;

전통적 의미의 “봉급”이란 노동에 대한 댓가로서만 인식되어 왔고 노동자의 need에 기초한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봉급을 받는 사람의 가족부양의 과정으로 인한 부가적 욕구를 봉급에 반영시키지 않았다. 19기세 말에 새로 나타난 기독교 사회주의의 경향은 전통적이고 개별적인 “봉급”的 기본개념을 사회적인 봉급 개념으로 대체시켰다. 즉 봉급은 노동의 댓가일 뿐만 아니라 가족부양으로 인한 부가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같은 일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자녀를 비롯한 의무적 부양가족이 많은 노동자에게는 독신이거나, 자녀가 적은 노동자의 봉급보다 많은 봉급이 주어져야 한다는 요지이고 이것이 바로 “사회적 봉급”의 개념이다.

19세기 후반부터 벨기에와 블란서의 기독교 사회주의적 이념에 찬동하는 일부 기업주들은 피고용자들을 위한 보너스형태로 가족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와같이 시작된 가족급여는 그 적용대상자 또는 수혜종류가 확대되어 현재에는 의무화되고 일반화 된데다가, 지금조건으로서 소득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의 급여가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가족부담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원래의 취지와 많은 차이가 있고, 법적인 기술면에서 부조와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보호기술 접근에서 우리는 가족급여를 다시 거론할 것이다.

셋째, 사회보험에 관하여 :

19세기 말까지 블란서의 사회적보호(Protection sociale)는 공적부조(assistance publique)에 관한 의무조항이 법으로 제정된 이외에 prévoyance 분야에서는, 철도 및 광산노동자들의 퇴직 및 산업재해를 위한 보호와 공무원의 퇴직연금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의무가입이 규정된 체계적인 보호제도를 거론할 뿐 법제화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다만 피고용자의 산업재해보상을 위한 고용주의 보생책임만이 위에서 언급한 1898년 법으로 의무화된 정도였다. 따라서 prévoyance 분야는 온갖 법적기술들이 임의적으로 적용되고 있었다.

국가는 연명대책이 없는 국민자의 호구지체만을 법제화<sup>7)</sup>한 이외에, 노동자 및 가족의 생활보호는 개인적인 해결방법에 맡겼고, 따라서 노동자들은 직종간의 연대성을 중심으로 자조적인 prévoyance 조직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세기 말 독일의 강단사회주의에 힘입은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질서를 위협하자, 재상 비스마르크는 노동자의 생활개선을 조건으로 독일 내 사회주의 운동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회보험을 설립하였고, 이는 구라파 여러 나라에 반향되었다.

사회보험은 보호기술의 측면에서 볼때 공제조합 또는 신용조합이 발전된 형태로서 의무가입 조항이 첨가된 것이 특징이다.

특정한 사회적 위험들을 예상하여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을 내야하며,

예상된 사회적 위험이 보험가입자에게 실현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개인보험에 비해서 기술상으로 발전된 점은 첫째, 보험회사의 이윤추구가 가입자의 연대성으로 대체되었다는 점과 둘째는, 개인의 보험료 수준은 위험발생의 빈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득에 비례하여 과다가 결정되며, 보상금의 수준은 보험의 원칙에 입각하여 실현된 사고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셋째로, 대상으로하는 직종의 모든 노동자의 가입이 의무화되므로 동일 직종 노동자들간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부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보호기술로서, 후자는 수혜의 권리로서 피부조자의 보호를 위한 사전노력이 요구되지 않는데 비해 전자는 보험료납부가 수혜의 권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부조와 *prévoyance*는 이념적 차원에서나 제도적 측면에서 共히 긴밀한 관계가 不在했던 듯하다.

불란서 혁명의 결과 소유권을 기본으로하는 부르조아 질서를 구가하는 자유사회가 도래하였고, 19세기 전체 기간동안 전개되는 산업화는 소유권에서 소외당한 대규모 노동자들의 계급형성을 촉진하였으며 이들은 당시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빈곤층과 동일시되었다.

당시 국가의 개념은 방임적인 것으로서, 치안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입에 국한하고, 그 일환으로 빈곤자들은 격리 수용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1793년 *Le Chapelier 法* 및 1813년 법으로, 노동자들의 짐회 및 결사가 노동의 자유라는 미명下에 철저히 금지되었다. 결과적으로, *prévoyance*를 목적으로 한 노동자들의 노력도 금지되고 탄압받았으며, 이 노력은 1850년에야 公權의 조심스런 감독하에 부활하게 된다.

이와같이 구빈 또는 *prévoyance*의 조직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던 지배계급은 19세기末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자들의 계급의식 및 그들의 양적인 확대에 의하여 기존 질서가 위협을 받게되자 노동자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일련의 개입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불란서의 경우, 국가개입의 대표적인 예로서, 첫째 1893년 의료부조법을 효시로 하는 일련의 부조법의 성립을 들 수 있겠고(이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부양의무를 인정한 것임), 그 다음으로는 19세기末 독일을 비롯한 구라파 각국에서 성립된 사회보험법을 들 수 있겠다.(이는 노동자 생활보호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인정한 것임).

결과적으로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블란서는 두 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의무제도를 구비하게 되는데, 이는 물론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을 의미한다.

공적부조는, 처음에는 *commune*(面에 해당)이, 이어서 *departement*(道)를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사회보험은 기존하는 노동자들의 공제조합금고들과 새로 법에 의해 설치된 금고들이 그 운영을 맡았다.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은 그 기본원리에 있어서 확연히 区別되는 것들로서, 전자는 공공단체의 관용에 의하여 베풀어지는 부분적이고 조건적인 권리였던 반면 후자는 현금납부를 수단으로 하고 노동자의 참여를 기초로 하는 노동자의 완전한 권리였다.

兩者의 관계는, 1941년 사회보험 관계법에 의하여 무각출급여금 지급이 사회보험에서 실시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무각출급여는 부조의 성격을 띤 급여금으로서 공적부조의 혜택은 이 급여금혜택이 없는 경우에 허락되었다. (공적부조의 참여적 보호원칙).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2차대전중 작성된 비버리지보고서(Beveridge Report)에 나타난 전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의 이념은 사회보험을 근간으로 하던 블란서 사회보호체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우선 일반화의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에 생존권의 보호가 국가의 의무로 규정되었고, 다음으로 사회보험을 위시한 모든 관계된 법적기술들이 사회보장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통합되고 체계화되기에 이르렀다. 구체적으로, 1945년 10월 4일 사회보장 조직에 관한 법령 이후 1946년까지의 일련의 관계법들은 사회보험(노령, 질병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가족수당제도들을 사회보장의 일반제도(régime général)안에 통합시켰다.

이와같이 성립된 사회보장제도는 종래의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던 봉급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블란서 내의 모든 생산활동인구 및 그 부양가족을 보호하게 되었다.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그 적용으로 종래에 공적부조법령에 의해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보호수준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규정들도 1953년 11월 29일 법령(*décret*)에 의하여 단순화되고, 부조의 기능도 사회보장의 보조적인 것으로

조정되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일컫는 불란서 사회부조의 개념이다. 이로써 불란서는 1953년부터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라는 두개의 상이한 실정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불란서의 사회보장제도는 창립 당시 입안자들의 의도와는 대조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제도로 봄버렸다. 다시 말해서, 애당초에 입안자들은 범국민적 연대성을 기초로 하는 통일된 보호체제를 세우고자 했으나 실제 적용上에서 여러 장벽에 부딪혀 결국 직종간의 연대성을 기초로 한 여러개 제도들의 연합체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성립을 보아야만 했다.

그 결과로서, 수혜수준의 격차문제와 혜택의 일반화문제가 새로이 거론되기에 이르렀고, 이에 公權은 1940년대 후반부터 주로 행정적인 개입을 확대시켜 나아갔고, 격차조정과 일반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재정을 사회보장 기입자들에게 부담지우므로써, 사회보장이 짊어지는 부당한 재정적 부담의 일부를 형성하였다.

사회보장의 일반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무각출급여금(퇴직연금의 경우)과 전국민을 위한 가족급여금은 부조의 성격을 띠는 것들로서, 사회부조의 급여금과의 구별을 어렵게 만들었다. 즉 위에서 언급한 급여금들은 사회보장 금고에서 지급하되, 부조적 성격을<sup>8)</sup> 띠는 것이다.

## 2. 현 재

논문의 두번째 부분에서는 실정법 체계상의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관계설명을 크게 두 단원으로 나누어 첫째 단원에서는 급여금 측면을, 둘째 단원에서는 제도적 측면(행정, 재정)을 다루었다.

### 가. 급여금의 측면에서兩者는 대조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수혜자 권리로서의 급여금; 우선 사회보장에서의 급여금은 대상자의 가입과 각출을 전제로하는 완전한 권리인 반면 사회부조의 급여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부양의무와 피부조자의 빈곤상태 및 특정욕구를 전제로 하는 부분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는다.

급여금이 띠는 법적 성격; 우선 사회보장의 급여금은 특정한 사회적 위험에 따라 생기는 가입자의 손실을 메우기 위한 "보상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실현된 사회적 위험의 중요도에 따라 결정된다. 그 예로서 가족급여금과 질병보험의 현물급여를 들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불입액(또는 보험금)의 과다로 급여금의 수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다. 예를들면, 노령보험금의 급여금 그리고 질병보험의 현금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수준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반면에 사회부조의 급여금은 부양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대상자의 생계능력 또는 여타의 동원가능한 재원의 부재 또는 불충분 시에, 또는 질병등으로 인한 과다한 비용지출로 인하여 생계의 위협을 갖는 경우에 각각 최저 수준으로 허락되는 것들로서, 급여금 수준은 대상자들의 경제적 상태와 주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

과실(faute)과 급여금과의 관계: 사회부조의 급여금지급에 있어서 피조자의 과실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보증(garantie)의 개념에 일치하는 사회보장급여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피급여자의 과실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의 경우, 사용자 혹은 노동자가 범한 과실은 급여금액수준과 관계가 있고 때로는 급여금수준 결정의 주요조건으로 개입한다. 그 실례로는 사용자의 의도적인 과실(faute intentionnelle) 또는 용서할 수 없는 과실(faute inexcusable)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같이, 과실의 유무를 정확히 규명함으로써, 노동자의 소득보장 효과는 한층더 높혀질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부조 급여금은 사회보장의 그것에 대해 보완적(supplémentaire), 보충적(complémentaire) 역할(rôle)들을 수행한다.

사회부조의 보완적 급여금이란, 사회보장의 가입 또는 보호규정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사회적 위협이나 대상자들을 위한 것으로서, 피조자의 최적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급된다. 보충적 급여금이란, 사회보장의 보호가 불충분한 경우(즉 급여금이 실현된 사회적 위협의 치료의 부분적 보상에 불과할 경우를 말함) 개입되는 것인데, 그 예로서 의료부조금을 들 수 있다. 불란서의 질병보험(사회보장제도내의)은 진료비와 기타 의료지출의 일부를 수혜자의 부담으로 돌리고 있다.<sup>9)</sup> 수혜자가 이것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의료부조는 부족한 액수의 일부분 혹은 전체를 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여전히 질병보험의 경우, 수술비, 입원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진료비 또는 기타 잡다한 경우, 환자인 피보험자는 일단 병원에 소요비용을 선납하고, 연후에 자기가 가입한 질병보험 금고에서 해당 액수를 환불받게 되 있는데, 만약

이 피보험자의 선불능력이 없거나 부족할 경우, 사회부조는 소정의 절차에 의한 심사를 한 후, 명원에 해당 액수를 선불하고 피보험자의 능력한도 내에서 사후에 환불받게 되어있다.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급여금은 임의보험( Assurance volontaire, 1967)과 개인보험( Assurance privée, 1978 ) 설립과 구빈예방적 성격을 띤 급여금( prestation d'action sanitaire et sociale ) 제도가 사회보장 제도 안에 설립되므로써 더욱 복합적으로 되었다.

첫째, 임의보험과 개인보험은 사회보장의 일반제도( régime général )안에 설치된 것으로서, 사회보장제도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을 위한 질병, 노령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이 제도의 보험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전액부담으로 되어 있으나 그가 경제적으로 부담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있으면, 소정절차에 따라 사회부조가 그의 보험금을 대납해줄 수 있게 되어 있다.

둘째, 구빈예방적 급여금이란, 사회보장금고가 가입자 또는 비곤자들을 위해 자치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사회부조 급여금에 대하여 참여적 개입을 한다.

나. 제도의 구조적 측면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주역한 대조를 보인다.

우선 행정적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사회보장은 現속에 이르러 혜택의 일반화 원칙에 따라 공공 서비스( service public )의 성격을 더 해가고 있지만, 실정법적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도 수혜자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법인체 격의 자치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보장 금고는 현재 공공서비스적 기능을 가지는 세개의 중앙금고들<sup>10)</sup>과 수혜자 가입업무와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수백개의 일선금고들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이사회는 수혜자인 노동자계급( 노동조합들 )과 기업주들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금고의 운영도 이들로부터 각출된 보험금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67년 사회보장법의 개정이후부터는 상기한 세개의 중앙금고들과 이를 금고들간의 예산할당을 맡은 ACOSS( 사회보장금고 중앙연맹 )가 공공기관( établissement public )들로서, 이를 중앙 금고의 장은 소관부처 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었고, 이사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 역시 높아졌다. 하지만, 거시적 안목에서 볼 때, 사회보장제도는 가입자들의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자치적 법인체의 법적 지위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사회보장 제도가 법인체의 성격을 띠는데 반하여, 사회부조는 그 재정의 대부분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예산의 일부로써 충당하여, 서비스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공무원 및 전문 공무원(여기에는 다목적 사회사업 가들이 포함됨)들에 의해서 실시된다.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이상의 설명에서와 같이 명확히 분리된 행정체계로서 상호간의 유기적 관계는 그리 깊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장애자 보호를 위하여, 종래의 구태의연했던 사회부조 급여금들이 예방적 성격을 띠고, 수준에 있어서도 현격히 향상된 종목으로 대체되었는데, 이 급여금들<sup>11)</sup>의 지급결정 및 재활보호에 관계된 기술적 자문제공을 위하여 사회보장 금고와 사회부조 기관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성인장애인 재활보호기구(COTUREP)와 아동장애인 특수교육기구(CDES)가 1975년 관계법에 의하여 결성되었다.

그 외에 의료부조와 질병보험 간의 조정을 위한 기구, 의료조절(controle medical) 그리고 사회부조의 소송 및 쟁의기구 등의 분야에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제도의 대표자들이 공동참여하고 있다.

제도의 재정적 측면에서 역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명확히 구분된다.

사회보장 재정의 대부분은 수혜자인 노동자들과 그들을 고용한 사용자들이 내는 보험금으로써 충당된다. 보험금은 수혜자의 직업활동에 의한 소득(revenue pressionnn)에서 일정한 비율로 공제된다. 결국 미래의 수혜자는 자신의 생활 안전을 위하여 보험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각출된 보험금은 사회보장 가입자들 중에서 예기된 사회적 위험이 실현된 사람에게 급여되는데, 이것은 보험의 원칙인 "위험분산"의 효과일 뿐, 그리고 모든 가입자에게는 사회적 위험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므로, 결국 보험금은 그것을 냈 사람을 위하여 급여금의 형태로 그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은 수혜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고, 사회보장제도는 이 밀접한 관계를 그 재정의 효율적 운영의 戰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입자의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책임의식을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의 조절을 통하여 항상 경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사회부조 대부분의 재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예산(공공기금, fonds public)의 일부로써 충당한다. 공공기금은 조세에 의

해서 충당되는 것이므로 사회부조 예산의 원천은 조세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sup>12)</sup>

사회보장과 사회부조는 共히 특정한 집단의 연대성에 기초하고 있다. 사회적 보호에서 연대성은 경제적인 것을 말하므로 이는 곧 특정 집단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라는 개념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직종별, 기능별연대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에 있어서는 종적인 방향으로 보다는 횡적인 방향으로 더욱 효과를 발휘한다. 즉 퇴직자와 생산층, 환자와 건강한 자, 득신 노동자와 많은 자녀를 가진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이다. 二次大戰 以後, 서구의 사회보장 제도들의 경험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회보장의 종적 재분배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sup>13)</sup>

이와는 달리 사회부조는 전국민의 연대성 또는 일정한 지역 주민들 간의 지연적 연대성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소득의 종적인 재분배에 뚜렷한 효과를 나타낸다. 즉 단순논리로 설명한다면,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의 형태로 납부한 돈이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직접 투입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일정 집단 내에 존재하는 연대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소득의 재분배에 있어서,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보호의 二元的 체계가 확립된 1953년 이래로, 사회보장과 사회부조 두제도는 유기적 관계를 더 해가면서 접근해 왔고, 결과적으로 부조와 보험 두 개념 간의 구분도 불명확하게 되었다. 연이나 사회보장이 담당하는 보상의 범위(대상자 및 사회적위험)가 점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잔여적 보호 역할을 맡는 사회부조는 점차 퇴색해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보호의 변화에 주목하는 일부 정책전문가들 중에는 사회부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전체적으로 노동부의 산하에 있던 사회보장제도와 보건부 산하에 있던 사회부조는 동일부처(사회부)의 소관으로 된 지 오래다.<sup>14)</sup>

사회보장제도가 지급하는 무각출급여금(예를들면 빈곤노인의 최저생계를 위한 급여금)은 빈곤자들의 최저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수혜대상자의 소득상한선이 수혜조건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보험원칙과는 아무런 관

계를 가지지 않는, 차라리 부조적 성격을 띤 급여금이다.

1946년 이래 가족급여의 보호대상은 노동자 및 가족의 범위를 넘어 섰으며,現今에는 비생산층 인구와 빈곤층에 까지 혜택이 돌아가는 전 국민에 대한 혜택으로 일 반화되었다. 제시하고 있는 급여조건에서도 초기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데, 그 一例로서 가족급여금 범위 내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그 급여조건으로서 수혜대상자 소득의 상한선을 제시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부조적 급여금과의 구별이 어렵게 되었다. 사태가 이쯤 되고보니, 1980년대 초에 집권한 사회당은 “조세화를 통한 소득재분배”의 명목으로 가족급여 재정의 특별조세화(fiscalisation)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같은 변화들과 이를 조장하는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보장 혜택의 일반화를 통한 전국민 최저생활보장이라는 입장에서 이론적인 합리화가 가능할지 모르나, 부조와 prévoyance 이 두개의 개념은 진화과정을 거쳐온 발달적 측면과 실정법 체계의 전통적 측면에서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이다. 연이나 사회보장의 부조화는 보험금이나 수혜수준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수혜자의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대한 책임의식을 희박하게 할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현재의 불란서 사회보장제도가 전국민의 최저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은 어떤 논리성에 입각해 있기 보다도, 2차대전 이후에 불란서 자본주의 사회에 나타난 하나의 신화에 불미한 듯하다. 직업간 또는 직종간의 연대성이 범국민적 연대성보다 훨씬 강력한 사회 속에서, 사회보장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비노동층, 빈곤층을 포함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한편으로 사회부조에서 내세우는 국민연대성 및 국가적 차원의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모호한 개념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도 지역간에 부조수준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 격차해소를 위한 국가의 재정적 개입이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이와같이 불란서에 있어서 “국가”라는 단체는 국민생활보호에서 가급적 재정적, 행정적 개입을 自翻해 온 것이 특성이다.

불란서의 헌법은 그 전문에 전 국민의 생존권을 암암리에 거론하고 있으면서도, 이어지는 헌법의 조문들은 그것을 구체화시키지도 않고 또 구체적으로 보장기관을 지적하지도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생활보호에 방임적

법정로 끝에는 사회보장제와 시장사지 문제에 그 입구를 험험했을 뿐 그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모든 생존수단으로부터 소외된 극빈층의 생존권은, 국가의 보장없이 아주 허황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란서 사회에서 국민의 연대성은 아직도 모호한 개념일 뿐이다.

#### IV. 결 론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통합 또는 二元的 제도의 계속적인 실시에 대한 합론을 박은 전국민의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현대사회의 목표구현과 직관되는 문제이고, 양자택일은 정치적 차원에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정법적 측면에서 볼 때, 사회보장과 사회부조의 二元的 제도운영은 당분간의 사회적 보호정책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장금고의 무각출 급여에 소요되는 재정을 국가가 지급함이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두 제도에 양 다리를 걸친 적이 돼있는 무각출 급여금의 써어비비스는 사회부조가 맡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초기의 역할 수행의 부적합성과 사회부조제도가 문제의 급여금 써어비스 실시에 보이는 무한한 잠재력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사회보장이 무각출급여를 실시할 경우, 그 주체대상인 빈곤층들은 그 대표를 이사회의 일원으로 선출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대표들은 이사회 집단총소수집단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빈곤층의 보호수준 개선을 응호하는 이들 대표들의 요구사항은 이사회에서 그다지 큰 반향을 일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국가가 이들 보호를 위해 보조금 형태로 사회보장 금고에 보조한 돈은 자칫 보험가입자 전체의 보호수준 개선을 위하여 유용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부조제도는 빈곤자 보호에 커다란 뜻을 해 낼 수 있다. 왜냐하면 첫째 사회부조제도는 사회보장에 비해, 전국토에 보다 광범위하고 균형적인 써어비스망을 가지고 있으며 써어비스 그 자체도 더욱 지방분권화되어 있어, 요구호자의 욕구에 밀착된 써어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회부조제도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부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빈곤자들에게 대한 풍부한 정보와 그들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정법 전통의 측면에서 볼 때, 블란서 사회보장은 노동권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구체화된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은 우선적으로 노동자와 가족의 생활안정에 집착함이 마땅하다. 노동인구 내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우선적으로는 보험금의 상한선제 철폐와 최저임금제의 철저한 적용이 요구된다. 이와 병행하여 상이한 세개의 직종금고들 간의 수혜격차 조절이 시급한 과제이다.

사회부조는 시작에서 현재까지 빈곤자의 최저생계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부조가 명실상부하게 모든 빈곤층의 생존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실효성이 보잘 것 없는 가족의 부양체권은 사회부조 수혜규정에서 삭제돼야 마땅하며, 아울러 수급절차를 단순화하여 부조국의 문턱을 낮춰야 하며, 지역적 수혜수준 격차 조절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이고 대폭적인 재정적 책임이 절대시된다.

블란서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는 노동자 및 가족의 정규소득 보장을, 사회부조는 빈곤층의 최저생계보장을 주된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제도가 각자의 당면목표를 뚜렷이 하고, 그것들의 효율적인 탈성을 위해서 사회적 보호제도의 二元的 운영은 가장 현실적인 착상일 것이다.

#### (註)

1. 블란서의 실업보험은 완전히 노사에 의한 조직과 운영에 일임되는 제도로서 아직까지 사회보장법에서 다루어 지지 않고 있다.
2. 최근 공공서비스의 개념으로 사회보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 公法분야에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3. 물론 회랑, 도마시대에 각각 *Eranos*, *Collèges*등의 자유민 조합들이 있었다.
4. 이것은 19세기 후반부에 블란서에 나타난 보호기술로서, 국가가 공제조합의 조직에 참가하고, 이자율등의 혜택을 수단으로 조합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자조적 노력을 도운 것을 말함.

5. 노동자의 의도적인 自傷의 경우에 보상은 신체치료와 수선에만 국한된다.
6. 산재보상은 의료보험금고가 맡고 있다.
7. 1893년 7월 15일의 의료보험법, 1905년 7월 14일의 노인부조법등등.
8. 첫째, 급여가 각출과 관계 없음. 둘째, 지급조건으로서 일반적으로 대상자의 빈곤상태가 포함됨 등등.
9. 소위 ticket modérateur라는 제도로서, 의료지출의 약 20~50%가 수혜자 부담으로 되어 있음.
10. CNA M(중앙질병금고), CHAV(중앙노령보험금고), CNAF(중앙가족급여금고).
11. 이 급여금들은 구체적으로 성인장애인들을 위한 생활보호급여금 및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급여금으로서, 그 재원을 각각 국가와 사회보장금고가 충당한다.
12. 上記한 공공기금以外에 수혜자(가족 및 사회부조법 146조) 및 가족부양채권(민법 205조 및 부수조항에 경시된 가족 및 친척의 부양채권)의 명목으로 거두어 들이는 환수금이 사회부조예산의 일부를 차지한다.
13. 그 대표적인 학자로서, Belgium의 H. Déleeck, "La Sécurité Sociale et la redistribution du revenu," *Problèmes*, (2Mars, 1977).
14. 1977년 4월에 보건 및 사회보장부가 설립되어 두 제도를 관할하였고, 현재는 그 후신인 사회부가 관할하고 있다.

#### (Bibliographies)

불란서 사회보장 및 사회부조 실정법에 관한 참고문헌들은 방대하다.<sup>1)</sup> 그러나 우리말로 쓰여진 책은 희귀하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에서 발간된 김 동희교수의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불란서의 사회보장 실정법 구조를 개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하나의 法 또는 制度는 그것이 위치하는 사회발전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 특히 오랜 발달과정을 거친 불란서 사회보장제도는 歷史的 발달을 공부함으로써 더욱 쉽게 이해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上記한 서적以外에 우리말로 된 해당문헌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参考로 아래에, 불어로 된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 H. Hatzgeld, *Du paupérisme à la Sécurité Sociale*.

; 이 책은 19세기 중엽부터 2차대전전까지의 불란서 사회보장제도 확립의 기초가 되는 요소들을 잘 소개해 놓은 책이다. 독자들은 소득재분배以外에 노동자의 生活안전이라는 각도에서 설명한 필자의 사회보장발달에 대한 설명에서 많은 새로운 idea를 발견하게 될것이다.

· Saint -Jours(yues), *Traité de Sécurité*, Paris, LGDJ.

; 이것은 여러 권으로 구성된 불란서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에 관한 책이다.

Tome I은 *Le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로서 불란서의 사회보장법

및 제도를 설명하고 있고, Tome II는 Catherine Mills가 쓴, *L'Economie de la Sécurité Sociale*로서 제목과 같이 사회보장을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Tome III은 Saint-Jours(yues) 외 3人에 의해 저술된 *Les Accidents du Travail* 즉 사회보장제도 中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을 법적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필자인 Saint-Jours(yues)에 따르면 Tome IV, Tome V가 곧 출판될 예정이라 하는데 각각 불란서의 농부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sup>2)</sup> 및 사회보장의 사회학이 主題가 될 것이라 한다.

- Dupeyroux(J.-J.), *Droit de la Sécurité Sociale*, Paris, Precis Dalloz, 1981.

불란서의 사회보장법제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제반 기본 idea들을 논리정연하게 잘파한 명저로서 손꼽히며, 불란서 사회보장제도를 공부하는 초보자에게 권하고 싶은 명저이다.

- Durand(Paul), *La Politique Contemporaine de la Sécurité Sociale*, Daloz, 1953.

이 책은 비록 오래된 책이기는 하지만, 사회보장의 기본 idea 및 歷史的 발달을 법학자의 시각과 논리체계로 잘 설명한 사회보장 분야의 古典이다.

- Netter(Francis), *La Sécurité Sociale et ses Principes*, Paris, Sirey, 1959.

역시 古典으로, 주로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서술형식으로 쓴 책이다.

기타 불란서 사회보장이란 主題로 부터 다소간 일반화된 古典으로.

- Schaller(F), *De la charité privée aux droits économiques et sociaux du citoyen*, Neuchâtel, éd. Baconnière, 1950. 이 있다.

사회부조에 관한 개론서적들로는

- Alfandari(Eile), *Aide Sociale, Action Sociale*, Paris, Precis Dalloz, 1977. 이 대표적인 것이고

• Thévent(Amédée), *L'Aide Sociale, Action Sociale d'aujourd'hui*, Paris, ESF, 1979를 꼽을 수 있다. 이 책은 제도 설명에 있어서 법적인 시각에서 약간 탈피하여 일반적인 설명을 첨가하고 있으므로, 법학도 이외의 사회과학도나 사회사업가들이 읽기에 적당할 것이다.

사회정책에 관한 서적들로는

- Fournier(J.), Questiaux(N.), *Traité de Sécurité Sociale*, Paris, Dalloz, 1980.

- 同, *Le Pouvoir du Social*, Paris, PUF, 1979.

• Belorgey(J.-M.), *La Politique Sociale*, Paris, éd. Seghers, 1979등을 예로 들 수 있으나 대부분 불란서의 사회정책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부기할 것은, 사회정책의 기본이념발달을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De Laubrèr (P), *L'Age de la Politique Sociale*, Paris, ed. tech. et éco, 1978을 특기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빈대책 및 사회사업을 전공하는 학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으로는 Lory(B.), *La Politique d'action Sociale*, Toulouse, ed. Privat, 1975가 있다.

1. 김동희,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0), p.199 및  
NA, Byong-Kyun, *Rapports entre Sécurité Sociale et droit positif français*,  
(thèse de doctorat, Univ. de ParisI) pp.327~348. 參照。

2. 블란서의 농부 사회보장제도는 산업분야 대고용자를 위한 사회보장일반제  
도와 분리되어 있다.

블란서를 비롯한 구라과 나라들의 사회보장제도의 모체는, 주로 19세기 산  
업화 영향으로 노동자들에 의해 조직된 풍제조합에서 찾을 수 있다.

노동자 생활보호대책으로써 사회보장의 기본원리를 정립시키고자 한다면, 이런  
욕구를 가진 학도들에게는, 초기 산업사회의 관련비판서적들이 많은 영감을 줄  
것이다. 이에 관계되는 불어서적 몇 권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Laurent(Emile), *Le Paupérisme et les Associations de Prévoyance*, Paris,  
Lib·Guillaumin et Cie., 1865, T.I et II.
- Lefort(J.) , *Les Caisses de retraites Ouvrières*, T.I et II.
- Lavielle(Romain), *Histoire de la mutualité*, Paris, Hachette, 1964.
- Buret(E.), *De la Misère des classes laborieuses en Angleterre et en  
France*, T. I. et II., Paris, Paulin, 1840. 등을 들 수 있다.

上記한 冊들 중 국내에서 입수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관심있는 학도들의 주문과, 이은 열면 연구 및 번역사업, 출판  
등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